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6. 9. 11.
행정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8. 21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6. 8. 24.

다. 상정일자: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(2026. 9. 11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기획예산과장 송상아】

가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 규정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존속기한(안 제3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권하나)

가.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

- 동 조례 개정안은 2026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6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- 본 개정안은 202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3조(존속기한) 통합기금의 존속 기한은 <u>2026년 12월 31일까지</u> 로 한다.	제3조(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31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.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·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계정에서 예수·예탁 하여 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, 재정안정화계정에 재원을 적립하여 세입 감소, 대규모 재난·재해 또는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임.
- 최근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, 순세계잉여금 감소 추세, 대규모 투자사업 및 국·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 등 중기 재정수요를 고려할 때, 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향후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의 존속 필요성은 인정됨.

나. 상위법령과의 관계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2항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되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본 개정안은 현행 존속기한 만료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,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므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다. 존속기한 연장의 법정 절차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.
- 마포구는 2026년 제1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¹⁾에서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 조정과 각 회계·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기금의 존속 필요성을 서면으로 심의하여 원안가결하였으므로, 관련 법정 절차는 이행된 것으로 판단됨.

1) 예산정책과-5038호(2026. 6. 18.), 「2026년 제1회 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」

라. 2024년 조례 개정 이후 운용 실효성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마포구 조례도 제2조에서 두 계정을 구분하고, 제4조와 제5조에서 각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각각 정하고 있음.
- 마포구는 2024년 7월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의 적립요건을 완화하고, 연간 사용한도를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의 50%에서 70%로 상향하였음.

[조례안 개정 전·후 비교]

구분	2024년 개정 전	현행
지방세 기준	최근 3년 평균 대비 30%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% 이상	최근 3년 평균 대비 10%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% 이상
순세계잉여금 기준	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% 초과 시 초과분의 10% 이상	최근 3년 평균금액의 30% 초과 시 초과분의 10% 이상
연간 사용한도	전년도 말 적립금의 50%	전년도 말 적립금의 70%

- 그러나 2024년 조례 개정 이후에도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자료상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실적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됨.
- 조례 제5조제1항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“적립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적립실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적정성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움.
- 다만 2024년 조례 개정이 적립요건을 완화하여 재정안정화계정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, 개정 이후 적립실적이 없는 사유와 연도별 적립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.

-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된 재원이 없어 통합계정을 통한 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 기능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음. 향후 세입 감소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안정화계정의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마. 적립기준의 실효성 및 향후 검토 방향

- 현행 조례는 지방세 세입액 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초과분의 일부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마포구는 순세계잉여금 적립요건을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30% 이상 증가한 경우로 적용하고 있음. 최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함에 따라 2024년과 2025년에는 적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.
- 타 자치구에서는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액의 일정 비율 또는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의 일정 비율을 적립기준으로 정하고 있음.

[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 관련 타 자치구 현황]

자치구	지방세 세입 적립기준	순세계잉여금 적립기준
마포구	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10%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% 이상	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30%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% 이상
광진구	지방세 수입 금액의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	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% 이상 적립
은평구	일반회계의 지방세, 경상적세외수입의 수입결산 합계금액의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	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% 이상 적립
관악구	별도 기준 없음	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의 10% 이상 적립

- 광진구와 은평구는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액의 일정 비율을, 관악구는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의 일정 비율을 적립기준으로 정하고 있음.
- 마포구의 현행 기준은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보다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적립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, 최근과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재원 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.
- 다만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매년 적립할 경우 일반회계의 가용재원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, 다른 자치구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마포구의 세입 여건과 중기 재정수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한편 행정안전부의 「202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2) (2025.12.)」에서는 다음 사항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있음.
 -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분리 운용 여부
 -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대비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수준
 - 전체 기금 예치금 대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·예탁금 비중
-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실적은 기금운용 성과분석의 평가지표와도 관련되는 만큼, 향후 재정여건과 중기 재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적립·운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- 2) (인센티브 신설)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우수단체에 인센티브 지급
 ※ '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 지표'가 가장 높은 자치단체에 지급(광역·기초 각 1곳)

< 인센티브 지급기준 >

< 현 행 >		< 개 정 >
▶ (종합실적) 자치단체 유형(12개)별 1위 자치단체에 각 1,500만원 지급 ▶ (개별실적) 기금 정비실적이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(광역·기초 각 1곳)에 각 1,000만원 지급	⇒	▶ (종합실적) 자치단체 유형(12개)별 1위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지급 ▶ (개별실적) 기금 정비실적 및 <u>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실적</u>이 각각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(광역·기초 각 1곳)에 특별교부세 지급

- 아울러 현행 적립요건으로 지속적인 재원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적립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립기준을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.

바.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2026년 말 만료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여 회계·기금의 여유재원을 지속적으로 통합 관리 하고 재정 변동에 대응하려는 것임.
- 기금의 기능과 중기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되며, 연장기간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서 정한 5년의 범위에 해당 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 2024년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요건을 완화하였음에도 최근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하면서 2024년과 2025년에는 적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, 이에 따라 현재까지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.
- 따라서 향후에는 세입 여건과 중기 재정수요, 일반회계의 가용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운용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 안정화계정의 적정한 적립·운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아울러 현행 기준으로 지속적인 적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포구의 재정여건에 적합하면서 적립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립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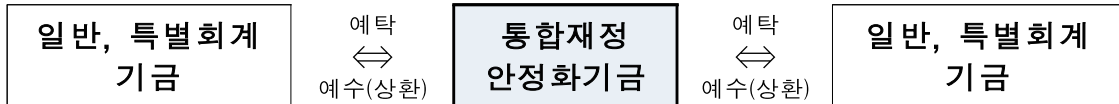
붙임 1

통합재정안정화기금 주요내용

□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(2020.6.9.)

개정내용

- ▶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(기금) 상호 간에 재원을 **예탁·예수할 수 있도록** 허용하는 근거 신설 (지방재정법 제9조의 2, 신설)



- ▶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(예산총액의 1%이내) 설정 (지방재정법 제43조, 개정)
- ▶ 여유자금을 적립·관리하는 기존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하여 '통합재정안정화기금' 설치 (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, 개정)

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 및 용도

구분	재원	용도
통합 계정	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예수금) 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	1.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 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재정 안정화 계정	1.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<u>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</u> ,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<개정 2022.3.24., 2024.7.4.> 2. 직전 회계연도 <u>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</u> ,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<개정 2024.7.4.> 3.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	1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,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단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.

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
(2024회계연도) / 지표별 세부기준

3.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(10점)

개요(정의)	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실적					
정책목적	재정의 안정적 운용,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 등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 제고					
목표·기준치 (바람직한 상태)	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가 높을수록 바람직					
산정공식	○ (지표1)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별 분리 운용 여부 (2점)					
	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세부배점</th></tr><tr><td>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(기금운용계획수립 등) ※ 1개의 계정만 운용하는 경우 0점(단, ‘24회계연도만 한시적으로, 계정은 2개이나 적립요건 미충족 등 합리적인 사유로 1개 계정만 운영한 경우 1점 부여, 1개 기금운용 계획에 계정을 명시하여 계획을 세운 경우도 1점 부여) ※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의 명칭(통합관리기금 등)을 사용하는 경우 0점</td><td>2점</td></tr></table>	구 분	세부배점	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(기금운용계획수립 등) ※ 1개의 계정만 운용하는 경우 0점(단, ‘24회계연도만 한시적으로, 계정은 2개이나 적립요건 미충족 등 합리적인 사유로 1개 계정만 운영한 경우 1점 부여, 1개 기금운용 계획에 계정을 명시하여 계획을 세운 경우도 1점 부여) ※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의 명칭(통합관리기금 등)을 사용하는 경우 0점	2점	
	구 분	세부배점				
	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(기금운용계획수립 등) ※ 1개의 계정만 운용하는 경우 0점(단, ‘24회계연도만 한시적으로, 계정은 2개이나 적립요건 미충족 등 합리적인 사유로 1개 계정만 운영한 경우 1점 부여, 1개 기금운용 계획에 계정을 명시하여 계획을 세운 경우도 1점 부여) ※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의 명칭(통합관리기금 등)을 사용하는 경우 0점	2점				
	○ (지표2) 순세계잉여금 대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수준(4점)					
	적립 수준 =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* 전년도 순세계잉여금** × 100(%) *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 전입금 ** 일반회계 기준,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채 상환 금액은 제외					
○ (지표3) 전체 기금 예치금 대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비중(4점)						
예치금 비중 =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+ 예탁금 개별 기금 예치금의 합 × 100(%)						
	○ (점수산정) (지표1) + (지표2*) + (지표3*) 점수 합산 * 실적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					

제출서식	(단위: 백만원, %)								
	자치 단체	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분리운용 여부	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적립액 (A)	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(B)	순세계 잉여금 중 지방채 상환 금액 (C)	통합재정 안정화기금		전체 기금 예치금 (F)	예치금 및 예탁금 비중 (D+E)/F ×100)
	○○시	○ / X / △	a	b	c	예치금 (D)	예탁금 (E)	f	(d+e)/f ×100
검증자료	※ 현장검증시 확인사항(✓) ▶ 기금결산보고서						연락처 작성자 (작성부서)		

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